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4. 2. 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2. 3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4. 1. 5.
- 다. 상정일자 : 제10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4. 2. 3)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손성천 지적과장)

가. 제안이유

개별공사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심의 사항중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과 기피 근거가 미비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소유의 토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의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3)

- (1)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 (2)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3) 토지특성 등의 잘못 조사를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 (4) 기타 심의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기피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인 바, 이는 안건의 심의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서 제척이 필요한 사례가 있었는가?
- 답변요지(손성천 지적과장) : 없었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임.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4촌인지 확인방법은?
- 답변요지(손성천 지적과장) : 이의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그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하려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장代) :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3의 기타심의 사항은 포괄적이므로 직접관계가 있는 심의사항으로 정정할 수는 있는가?
- 답변요지(손성천 지적과장) :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03.12.30

제출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심의 사항중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과 기피 근거가 미비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소유의 토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의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전에 대한 제척·기피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의3)
- (1)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 (2)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3) 토지특성 등의 잘못 조사를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 (4) 기타 심의사항

3. 개정 근거

-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2조의2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14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3. 11. 20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 12. 29)
-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소유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2.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3. 토지특성 등의 잘못 조사를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4. 기타 심의사항

②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생략)</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p> <p>(신설)</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생략)</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현행과 같음)</p> <p>②-----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p> <p>③-----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p> <p>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소유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2.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3. 토지특성 등의 잘못 조사를 이유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4. 기타 심의사항 <p>②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